

# 2016년 1/4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서

2016. 5. 2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
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

# 2016년 1/4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서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연 번	안 건	협 의 내 용	결 과
1	'15년 3/4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	○ 공사는 기존에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한다.	의견일치
2	식기세척기 구입	○ 식기세척기 미설치 2개소는 구매하여 지급하고, 나머지 5개소는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구매한다.	의견일치
3	퇴직금 중간정산	○ 공사는 2016년 하반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.	의견일치
4	예산 조기 확보 대책 마련	○ 공사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	의견일치
5	고덕·도봉 기술사업소 이중창 설치	○ 공사는 예산 확보 후 해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.	의견일치
6	현업사업소 부서운영비 등 각종 예산 현실화	○ 기술직능 노사간 협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.	의견일치
7	건대기술사업소 지상이전	○ 공사는 건대입구기술사업소 지상이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한다. ○ 걱정위치 등 제반사항은 기술본부 노·사 공동 업무환경개선 T/F에서 논의한다.	의견일치

연 번	안 건	협 의 내 용		결 과
8	업무조정, 건축분야 인원 총원	조 합	○ 시설물 증가와 신입무에 대하여 노사 공동으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여 인원증원 산출	의견불일치
9	승강기안전단 인원 재산정			
10	스마트몰 업무이관, 미비점 조치와 인력 증원	공 사	○ 전체 기술분야 연구용역 실시	
11	시설지원단 이전	○ 시설지원단 이전은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 한다.		의견일치
12	모란기술사업소 기계직종 침실 지상화	○ 공사는 예산 확보 후 운영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한다.		의견일치
13	몽촌토성 기술지원반 TV시청 설비 설치	○ 공사는 난시청 근무지에 대한 TV시청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		의견일치
14	부천기술사업소 유지보수 최소인원 및 연장구간 기능실 확보	○ 공사는 인천시 및 부천시와 협의하여 추진 한다.		의견일치
15	역사 내 기능실 디지털 도어락 설치	○ 노사는 2016년 1/4분기 역무직능 노사 협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한다.		의견일치
16	각종 TF 폐지, 파견직원 현장복귀	○ 공사는 현장 직원의 본사 파견을 최소화 한다.		의견일치
17	보안관지부 노사 분과협의회 설치	○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 시 논의 한다.		의견일치
18	적성검사관련 출장비 및 교통비 지급	○ 서울시 지방공무원 출장비 등을 검토하여 2/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.		의견일치
19	승무분야 반일휴가 사용	○ 2016년 6월말까지 반일휴가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(예산, 인력운영 등) 후 노사 상호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016년 7월부터 시행한다.		의견일치

연 번	안 건	협 의 내 용	결 과
20	7호선 24시간 운행 및 6호선 급행열차 추진 중단	○ 공사는 7호선 24시간 운행 및 6호선 급행열차 관련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노사가 합의한다.	의견일치
21	이례상황 발생,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	○ 이례상황 발생으로 인해 초과근무 발생 시 법적수당을 지급한다.	의견일치
22	주박지 냉방설비 설치	○ 주박지 침실 온도 측정결과에 따라 순차적 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한다.	의견일치
23	철도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당 지급	○ 철도운송산업기사 관련 기술수당 자격 범위를 승무직렬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·추진한다.	의견일치
24	근무복 세탁	조 합 ○ 본사 근무자에 대한 동계근무복과 가디건 세탁 공 사 ○ 본사 특성 감안, 세탁 불가	의견불일치
25	침구류 지급	○ 공사는 모터카 운전원에 대하여 침구류를 지급하도록 한다.	의견일치
26	성희롱 예방 교육	○ 성희롱 예방 교육은 노사공동으로 진행 한다.	의견일치
27	임시 공휴일 부여	○ '16.5.6.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 관련 교대·교번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간근무일 1일의 공휴 대체휴일을 부여하며, 사용기간은 '17.3.31. 까지로 한다.	의견일치

2016. 5. 2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사 장

김 태 호



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

위원장

명 순 필

